

# 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4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 의장

2014. 11. .

제 목 :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제출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의원 의정  
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제출 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제출 1부. 끝.

발의자 : 이성복 의원, 강철우 의원, 권재경 의원, 김종두 의원,  
표주숙 의원, 최광열 의원, 형남현 의원, 이흥희 의원,  
변상원 의원, 박희순 의원, 김향란 의원

# 서 명 날 인 서

□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직 위	성 명	날 인	비 고
의 장	이성복		
부의장	강철우		
총무위원장	권재경		
산업건설위원장	김종두		
의회운영위원장	표주숙		
의 원	최광열		
의 원	형남현		
의 원	이흥희		
의 원	변상원		
의 원	박희순		
의 원	김향란		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4. 12. . (제 206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성복 의원 외 10
발의연월일	2014. 11. .

##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~9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14. 11. 25.
제 출 자	이성복 의장 외 10명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(월정수당 1.7% 인상)에 맞춰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금액 변경 (안 제6조 제2항)
  - 1,566,660원 ⇒ 1,593,290원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 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- (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3조

#### 나. 예산 조치 :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

#### 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타 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,566,660원”을 “1,593,290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월 <u>1,566,660원</u>으로 한 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1,593,290원</u> -----.</p>

## 관련 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#### 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.>

### 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#### 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4.6.3.>
 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 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